

양성평등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위원회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하신 뜻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동역자 정신으로 교회와 가정, 사회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장 조직과 사업

제3조 (조직)

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총회 공천 10인(남성 5인, 여성 5인)
2. 위원회 추천 2인
3. 기관 추천 3인 : 여신도회 1인, 남신도회 1인, 청년회 1인

제4조 (임기)

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첫 공천에서 연조를 나누어 공천한다. 임기는 총회 후 첫 정기회부터 기산한다.

제5조 (임원)

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서기 1인의 임원을 정기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6조 (사업)

본 위원회는 양성 평등적 구조를 위한 연구와 지도력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(회의)

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.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결의)

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4장 개정 절차

제9조 (개정)

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
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
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
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
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